

육아휴직 급여, '무조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후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자녀를 출산하여 약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14개월 후 A씨는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법고용노동청은 구 고용보험법(200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에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신청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강행규정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

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강행규정과 훈시규정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관련 법률

(1)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육아휴직 급여)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을 의미합니다.

(2)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또한 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반환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신청권(제70조 제2항)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급여액을 집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청구권(제107조)은 성질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한 후 급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권리가 구체적 형태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을 때부터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에 대하여 관례는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은 제척기간이며,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예외: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